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인터넷은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웹으로 통합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미디어를 자유롭게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소극적인 정보의 소비자들로부터 인식되던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정보의 생산자로 변모시켰다.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들은 그 속도와 파급력 면에서 이전의 개인 간의 통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순수한 통신형태는 여전히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이지만,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블로그(blog)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발현되는 개인의 의견도 때로는 이전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입법적 과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인터넷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영원히 보존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사이버상의 또 다른 자아는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인가 아니면 탄생처럼 죽음도 맞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쇄매체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게 되는 구조였다. 반대로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로 인해 보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털기’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망각이 일반적이었고 기억이 예외였던 데 반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기억이 일반적이 되었고 망각이 예외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디지털화로 인하여 개인에 대한 망각이 기본값이었던 과거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각인되는 상황을 쇠베르거(Viktor Mayer-Schönberger)는 벤담(Jeremy Bentham)이 경고하고 있는 견고한 ‘원형감옥(파우티콘)’이 디지털화로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시간 검색과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편의 못지않게 사생활 노출과 과도한 가상세계 몰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기술·보관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입장에서는 개인 관련적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경우에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언론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하여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잊혀질 권리’는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사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명시하게 되면 자칫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의 결정례나 판례의 집적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과 법제의 정립도 시급할 것이다.

